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정책브리핑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7. 17.(월)	담당부서	유통물류과
담당과장	정종영 과장(044-203-4380)	담 당 자	허정민 사무관(044-203-4381)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책

-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-
- 대형상가 입주상인을 위한 관리제도 강화 -

□ 정부는 7.16.(일) 관계부처 합동으로 **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**를 위한 **「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」**을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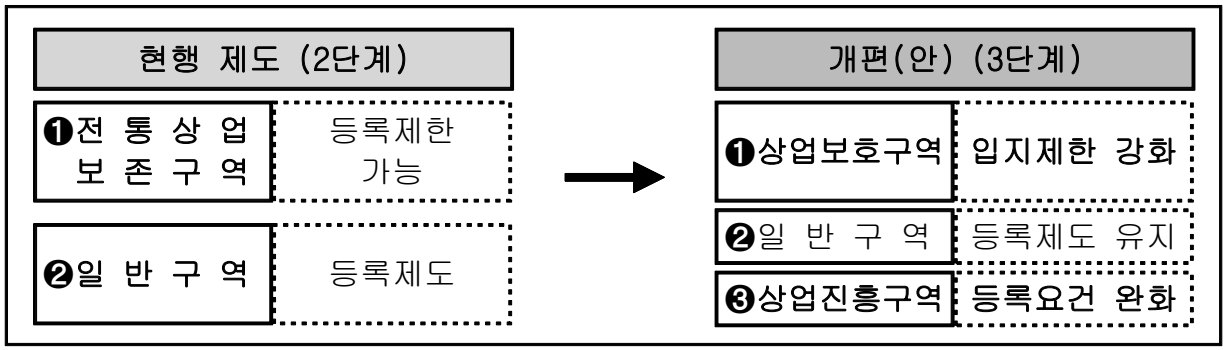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전통시장, 상점가,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**하기 위해, ① **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**, ② **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**, ③ **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**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상기 대책에 포함했다.

① **(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)** 대규모점포에 대한 **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**하고, **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**하기로 했다.

○ 현행 **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**으로 구분되던 체제를, **상업보호구역, 상업진흥구역, 일반구역** 등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- 새롭게 도입되는 **상업보호구역**은 전통상업보존구역(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) **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**하여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.

-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**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**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.



○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(SSM)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**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**하되, **규제 여부와 대상을 지자체가 선택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**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**하기 위해, **상권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**하고, **평가서 작성주체를** 사업자가 아닌 **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**할 계획이다.

○ **백화점 등 대규모점포**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 행사(**출장세일**)**를 하는 것을 금지**하고, 등록과정에서 **지역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**하기로 했다.

② **(대형상가(분양된 대규모점포)의 관리자제도 강화)** 상가건물 관리자가 **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.**

*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, 회계서류 작성, 관리규정 제정,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

③ **(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)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완화**(점포수 50개 → 30개 이상)하여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**상점가(거리상권)를 확대하기로 했다.**

□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대책은 **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**하며, 입법기관인 **국회와 긴밀한 협의**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허정민 사무관(044-203-43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